

정정신고(보고)

2026년 8월 6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삼성KODEX단기채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2년 1월 31일

3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41조의2 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	①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(추가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,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
부칙		(신 설)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된다 (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)